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23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6. 6. 5.

제출자 : 보건소장

1. 개정이유

2003. 7.16 국무총리 주재 「호국보훈정책 중장기 발전계획」의 일환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 시책을 범 정부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유공자 및 가족이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용이나 수수료 등을 면제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양 및 주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취하고,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통한 주민건강복지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내용 중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를 삭제 (안 제1조)
- 나.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변경 (안 제2조제1항)
- 다.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규정에 의한 1종 보호대상자, 2종 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자대상자를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수급권자로 변경 (안 제3조제1항)
- 라. 국가유공자 등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항목 신설 (안 제3조제2항제7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국민건강보험법 제정(1999. 2. 8. 법률 제5854호)
 - 의료급여법(2001. 5.24 법률 제6474호)

- 의료급여법시행령(2001. 9. 9. 대통령령 제17379호)
- 의료급여법시행규칙(2001.10. 9. 보건복지부령 제202호)
-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1조, 제42조
-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7조
- 5.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33조, 제34조
-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 제7조
-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7조
-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
-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33조

나. 예산조치 : 없 음

다. 협의사항 : 의약과와 협의되었음

라. 기 타

- 입법예고(2006.2.28. ~ 3.20.) 결과 : 의견없음
-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
조례”로 한다.

제1조(목적) 중 “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”를 “「지역보건
법」 제14조”로 한다.

제2조(수수료 및 진료비) 제1항 중 “의료보험법”을 “「국민건강보험법」”으로 하
고, “의료보험법 제35조”를 “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2조”로 한다.

제3조(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) 제1항 중 “의료보호법 시행규칙”을 “「의료급여
법 시행령」”으로 하고, “1종 보호대상자, 2종 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
자”를 “의료급여수급권자”로 하며, 동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제7호를
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동조제4항 중 “제2항제7호”를 “제2항제8호”로 한다.

7.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,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, 5.18민주유공자와
그 유가족,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, 참전유공자,
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,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<u>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</u>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수수료 및 진료비) ①의료보험법에 의한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<u>의료보험법 제35조</u>의 규정에 의한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다.</p> <p>② (생략) 1. ~ 8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3조(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)①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 보호대상자, 2종 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 대상자에 대하여는 제2조 별표 중 제2호, 제3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.</p> <p>② (생략) 1. ~ 6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신설)</p> <p>7.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원외 약국 조제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는 조제한 원외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「지역보건법」 제14조 ----- ----- -----</p> <p>제2조(수수료 및 진료비) ① 「국민건강보험법」 -----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2조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 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)① 「의료급여법시행령」 ----- ----- 의료급여수급권자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 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<u>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,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, 5.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,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, 참전유공자,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, 특수 임무 수행자와 그 유가족</u></p> <p>8.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제2항제8호의 규정에 ----- ----- -----</p>